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안)

의안 번호	3658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년 4월 21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3583호)에 대해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(2026년 4월 21일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‘음식판매자동차’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‘일반음식점영업’을 추가 하고자 하는 시장 제출안(의안번호 3583호)의 입법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,
- 시장 제출안의 ‘용어 약칭’으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, 동 시장 제출안에 포함된 조문과 연관성이 있는 현행 조례 조문의 연동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상위 법규명령(법 시행규칙)을 인용하는 약칭 규정을 명확히 정비 (안 제2조 및 안 제4조)
-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‘음식판매자동차’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‘일반음식점영업’을 추가함 (안 제2조)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안)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15의 2”를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“음식판매자동차 영업”이라 한다)”을 “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“음식판매자동차 영업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관련법령”을 “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련법령”을 “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위 원 회 (대안)
<p>제1조(목 적) 이 조례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, 청년·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·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 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
<p>제2조(영업장소) ① <u>시행규칙</u>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<u>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</u>(이하 “<u>음식판매자동차 영업</u>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(이하 “<u>시설·장소</u>”라 한다)로 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영업장소) ① 「<u>식품위생법 시행규칙</u>」(이하 “<u>법 시행규칙</u>”이라 한다) ----- <u>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</u>(이하 “<u>음식판매자동차 영업</u>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4조(영업장소 지정신청) ① <u>시행규칙</u>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</p>	<p>제4조(영업장소 지정신청) ① <u>법 시행규칙</u> ----- -----</p>	

현행	위원회 (대안)
<p>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·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.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)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<u>관련법령</u>에 따른 위생,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,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) ----- -- <u>관련 법령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)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<u>관련법령</u>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) - ----- ----- --- <u>관련 법령</u>----- -----.</p>